

# 「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0. 30 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7. 11. 05(월)

다. 상정일자 : 2007. 11. 05(월) 제14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7.11.05)상정·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기획감사실장 김학근)

가.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에 따라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었던 평창군 소속 및 평창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윤리위원회 관할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,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, 일부 내용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 범위 변경(안 제3조제1항)
  - 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한 심사 결정권 삭제
  -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 범위 내의 공직자로 한정
-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변경(안 제3조제2항)
  -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평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.
  -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평창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.
-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차보고서로 의회 제출(안 제10조)
- 기타 개정사항
  - 조례명을 현행 법령제명 띄어쓰기방식으로 수정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,

나.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

- 기존의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범위에서 평창군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, 평창군 의회의원 및 평창군의 4급공무원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,
-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평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와 평창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,
- 위원회는 매년 당해연도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,
- 기타 현행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맞도록 제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

다. 결과적으로

- 행정자치부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추진지침에 의거 개정하려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**

**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【붙임】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. 끝.